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19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송재봉·허성무·임호선

서영교 • 이원택 • 민병덕

김성환 · 문정복 · 이병진

진선미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				
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				
·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				
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u>준 이상인 경우</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